

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1907
- 제 안 자 : 최정순 의원 외 10명
- 제 안 일 : 2020년 10월 14일
- 회 부 일 : 2020년 10월 26일

## 2. 제안이유

- 2019년 7월 18일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,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위로하고,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이를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확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규정함(안 제5조제1항제2호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

다. 입법예고(2020. 10. 29. ~ 11. 5.) 결과 : 의견 없음.

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 위로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 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조례 제정(2019.7.18.)이후, 88명이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며,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확대할 경우 91명이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임.

[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현황 ('20. 9. 30.기준)]

신청	선정	탈락
267명	88명(33.0%)	179명(67.0%)

- 다만, 다른 광역시·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의 경우에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국가유공자 등 대상 예우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[다른 광역 시·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금액 및 소득기준]

구분	지원금액	기준 중위소득	비고
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	광주광역시	10만원	100%
	전라남도	10만원	100%
	경기도	10만원	100%
	충청남도	10만원	100%

[서울시 국가유공자 등 대상 예우 및 지원 현황]

구분	지원금액	기준 중위소득	비고
국가보훈대상자 (419, 518 유가족 포함)	생활보조수당	10만원	50%
	보훈명예수당	10만원	-
독립유공자	생활지원수당	20만원	70%
	보훈명예수당	20만원	-
참전유공자	참전명예수당	10만원	-

65세 이상  
※ 중복지원 불가

자녀 또는 손자녀

독립유공자 본인

※ 2020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

(단위 : 원/월)

기준 중위소득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비고
200%	3,514,388	5,983,960	7,741,154	9,498,348	11,255,542	13,012,736	
⋮							
100%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
85%	1,493,615	2,543,183	3,289,990	4,036,798	4,783,605	5,530,413	서울형 긴급복지
80%	1,405,755	2,393,584	3,096,462	3,799,339	4,502,217	5,205,094	청년꿈나래통장 희망은돌기금
75%	1,317,896	2,243,985	2,902,933	3,561,881	4,220,828	4,879,776	국가긴급복지
50%	878,597	1,495,990	1,935,289	2,374,587	2,813,886	3,253,184	교육급여
45%	790,737	1,346,391	1,741,760	2,137,128	2,532,497	2,927,866	주거급여
43%	755,593	1,286,551	1,664,348	2,042,145	2,419,942	2,797,738	서울형 기초보장
40%	702,878	1,196,792	1,548,231	1,899,670	2,251,108	2,602,547	의료급여
30%	527,158	897,594	1,161,173	1,424,752	1,688,331	1,951,910	생계급여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

- 또한,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 가구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(국가유공자)간 형평성 저해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「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바, 관련 법 제 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추이 등을 살펴 명예수당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

- 대표발의 : 우원식 의원(더불어민주당, 기획재정위원회) ※ 2020. 9. 23. 발의
- 주요내용 :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
  -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, 대부, 양로지원,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
  - 각종 기념·추모사업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 설치

전문위원

김태한

입법조사관

김정덕